

규 정 집

24.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 청사 시설 관리 규정

제정 2017. 12. 28.(규정 제69호)

직제규정의 부칙에 따른 일괄 개정 2019. 07. 01.(규정 제92호)

개정 2020. 08. 27.(규정 제116호)

개정 2022. 07. 13.(규정 제1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 청사의(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3.)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시설물’이라 함은 진흥원 합천청사에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과 건축물에 부수되는 각종 설치물 및 운동장, 구축물, 조경물 등 옥외 조형물을 말한다.(개정 2022. 7. 13.)

② “관리 “라 함은 시설물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최적의 상태로 유지·보존하는 제반행위를 말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는 일반관리업무와 유지·보수업무로 구분한다.

③ “시설관리자 “는 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경영기획본부장이 시설관리자가 된다.(개정 2019. 7. 1, 2020. 8. 27, 2022. 7. 13.)

④ “분임관리자 “라 함은 관리자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임받은 자로 경영지원팀장이 분임관리자가 된다.(개정 2022. 7. 13.)

⑤ “시설사용자 “라 함은 시설물의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사용료 “라 함은 사용자가 이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진흥원 합천청사의 시설물에 한해 적용하며, 조례와 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경남예술창작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경남예술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2. 7. 13.)

제2장 관리원칙

제4조(관리책무) ①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용역관리 등 지도감독의 책무를 지며, 시설관리자는 시설물운영 전반에 대한 책무를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임관리자는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 및 운영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원칙) ① 진흥원은 각종 시설물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에 필요한 지출과 임대료 및 사용료 등 기타 수입은 적정하게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관리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진흥원은 진흥원 자체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개정 2022. 7. 13.)
2. 도민, 공무원, 학생, 예술인 등의 문화예술·문화산업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개정 2022. 7. 13.)
3. 그 밖에 문화예술·문화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22. 7. 13.)

제7조(시설사용 신청) ① 진흥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을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신청기간은 사용 전 15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 초청 행사
2. 진흥원 시설이 비워져 있을 경우

③ 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3.)

제8조(사용일수의 기준 등) ① 진흥원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신청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진흥원 운영 목적에의 부합성

2. 진흥원 문화예술·문화산업 관련 지원사업 지원 선정 단체(기업) 또는 개인
(개정 2022. 7. 13.)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문예술단체 또는 법인, 콘텐츠 분야 단체(기업)
(개정 2022. 7. 13.)
4. 경상남도 소재 문화예술·문화산업 관련 단체(기업) 또는 개인

제9조(사용승인 거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진흥원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진흥원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진흥원의 시설 또는 설비에 심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경우
4. 이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진흥원의 시설운영에 지대한 장애를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사용신청서의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거나, 사용 내용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사용승인 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3. 시설이용자가 진흥원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4. 사용계약에 위해되는 행위에 대한 진흥원의 개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11조(사용내용의 변경) ① 진흥원은 진흥원의 사업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사용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4조 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행사예정일 15일전까지 진흥원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행사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시설사용 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시설사용 승인서에 명시된 일자까지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사용허가 신청과 진흥원의 승인통보, 사용료의 납부로 시설사용 계약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의2(시설사용자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한다. (신설 2022. 7. 13.)

1. 시설사용 신청 시 제시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대관시설 및 대여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하드웨어 세팅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한다.
3. 관리자의 승인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 및 삭제할 수 없다.
4. 외부장비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승인 하에 가능하다.
5. 시설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 하여야 한다.
6.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7. 숙박 시설 이용 시 시설 내 취사는 금지하며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8.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진흥원이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9.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과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3조(사용료) ① 진흥원은 수익자 비용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 7. 13.)

1. 진흥원 문화예술·문화산업 관련 지원 선정 단체(기업) 또는 개인(개정 2022. 7. 13.)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전문예술단체 또는 법인, 콘텐츠 분야 단체(기업) (개정 2022. 7. 13.)
3. 경상남도 소재 문화예술·문화산업 관련 단체(기업) 또는 개인(개정 2022. 7. 13.)
4. 공무원 및 초·중·고 대학생
5. 기타 진흥원의 시설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사용자는 진흥원이 정한 계약료로 정한 기일까지 사용료를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 단, 사용기간 중 추가로 부대설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진흥원의 사용허가를 득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진흥원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사용 예정일 15일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여 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진흥원은 자체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안전관리) ① 진흥원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 7. 13.)

② 진흥원은 시설사용자의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자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안전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과 배상 등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2호>(직제규정 부칙에 따른 일괄 개정)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2019. 7. 1.자로 시행한다.

부 칙(2020. 8.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청사 시설사용 신청서				
신 청 자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소 속			전화번호	직장 자택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내 용	시 설 명	☐ 숙소(온돌 1인실____, 4인실____, 침실 1인실____, 3인실____) ☐ 공연장, ☐ 대강의실, ☐ 소강의실, ☐ 회의실(____), 기타____		
	공연(행사)명			
	예정인원			
	행사일시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시 분 ~ 시 분(시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귀하				

[별표 1](개정 2022. 7. 13.)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청사 시설사용료 (제13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숙 박	1인실(침실)		20,000	
	1인실(온돌)		20,000	
	3인실(침실)		40,000	
	4인실(온돌)		40,000	
시 설	공연장	전일/반일	50,000/30,000	10인 이상 숙박이용 시 무료
	대강의실	전일/반일	50,000/30,000	
	소강의실	전일/반일	30,000/20,000	
	프로젝트실	전일/반일	30,000/20,000	
	미디어실	전일/반일	30,000/20,000	
	회의실	전일/반일	30,000/20,000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청사 시설관리 및 운영 규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단체(개인)은 50% 감면